

제13049호

관

보

1995. 6. 28. (수요일)

- 나.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도시 지역 거주 주민과 농어촌 지역의 주민은 농어촌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다. 내무부장관은 농어촌주택의 품질 관리에 필요 한 조치를 행하여야 하며, 농진공 등을 품질 관리 기관으로 지정하여 자재 성능 검사, 시공 감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라. 세대원의 전부가 1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고 비워두는 건축물을 공가로 정의하고 시장·군수가 공가에 대한 철거·개축·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미이행 시는 이를 시장·군수가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
- 마.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시장·군수이의 농어촌 진흥 공사, 주택 건설 축진법 제6조에 의해 전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 농어촌주택조합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내무부장관(참조: 지역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와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 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 등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내무부 지역개발과(전화 731-2270)로 연락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공고 제1995-15호

온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법령안 입법에 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5년 6월 28일

내무부장관

온천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1. 개정 취지**

온천의 온도 기준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양질의 온천에 대하여는 개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온천 요양 수요에 부응하고 온천 차원의 보전·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온천의 전전한 개발·이용·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온천의 온도 기준을 저하증 온음을 차감한 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으로 하여 온도 기준을 강화함.
- 지역적 특수성으로 온천 치구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이 곤란한 지역은 온천 공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온도·성분이 우수하고 주변 환경이 양호하여 질병 치료 및 심신 요양에 적합한 온천은 보양 온천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함.
- 동력 장치의 허가 시 수위 측정 장치 및 적산 유량 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온천 치구 또는 온천 공 보호 구역 안에서의 지하수 개발을 금지하여 온천 차원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도모함.
- 온천 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온천 이용객이 표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온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함.

3. 법률(안)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내무부 지역개발과(731-2270)로 전화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4. 제출 의견

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내무부장관(참조: 지역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 번호 등

고 시**◎재정경제원 고시 제1995-23호**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 환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년 6월 28일

재정경제원 장관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 환 관리 지침

제 1 절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 환 관리

제13049호

관 보

1995. 6. 28. (수요일)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 지역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 관리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외국환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거주자와 외국환 관리규정 제12장제2절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한 현지법인(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의 북한 지역에의 투자 및 북한지역사무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대북투자 업종이 금융·보험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 (투자의 방법) 거주자와 현지법인의 북한 지역에의 투자(이하 "대북투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북한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충권 또는 출자지분 등을 취득하는 방법
2. 제1호의 법인에 대하여 투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상환기간 1년 이상에 한함)을 대부하는 방법
3. 북한지역에 지점을 설치 또는 확장하기 위하여 그 지점에 자금을 지급하는 방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북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는 방법

제5조 (적용규정) ①제4조 1, 2, 4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4조제3호의 북한지점 및 북한지역사무소(이하 "북한지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절 법인설립 등의 방법에 의한 투자

제6조 (투자의 요건)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한다.

1. 투자자가 금융기관의 규제대상이 되는 불량거래처가 아닐 것
2. 투자자가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투자수행능력이 있을 것

②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한다.

1. 시설투자의 금액, 부동산취득, 소요운전자금 등 자금운용계획과 소요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2. 생산 및 매출계획이 시설규모와 시장수요 등에 비추어 적정할 것
3. 투자원금 및 과실의 회수가 가능하고 이익계획이 적정할 것

제7조 (투자의 신고)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현지법인의 경우에는 그 현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②현지법인의 대북투자의 경우, 신고를 받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최초 해외투자시 허가 등을 한 기관에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북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북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원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서 사본
2. 투자에 관한 최종합의서 사본
3.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부속명세서가 있는 경우 그 부속명세서)
4.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원장관의 변경승인서 사본

제8조 (의견요청) 제6조제2항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재정경제원장관은 필요시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은행의 장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투자금의 송금등) ①대북투자신고를 한 자(이하 "대북투자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바에 따라 투자를 실행하기 위하여 북한에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대북투자자가 현물로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내용에 따라 물자를 반출한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투자금 등의 회수) ①대북투자자는 승인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당해 투자의 원금 또는 과실을 현금 또는 현물로 남한에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과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대북투자자가 신고한 사업을 청산하거나 투자금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대북투자자는 협력사업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해 투자사업을 즉시 청산하여야 한다.

④대북투자자가 투자금액을 감액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투자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감액한 투자금 또는 잔여 재산을 즉시 남한에 회수하여야 한다.

1. 사업기간의 종료

2. 협력사업 승인의 취소

3. 증권, 지분 및 사업등의 양도

4. 제4조제4호의 경우 사업목적의 달성을 등

5. 기타 사유로 인하여 투자사업을 청산하는 경우

제11조 (대북투자의 사후관리) 재정경제원장관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하여금 대북투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북투자사업 실적을 분석·검토하며 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게 하는 등 대북투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서의 제출등) ①대북투자자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일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권, 지분, 대부채권의 취득 및 변동보고서 : 취득 또는 변동후 1월이내,

2.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 후 5월이내

3. 대부원리금 회수보고서 : 즉시

4. 청산보고서 : 청산후 2월이내

②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대북투자의 사후 관리 등을 위하여 대북투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대북투자에 대한 필요조치의 시행) ①재정경제원장은 대북투자자가 대북투자와 관련하여 외국환관리규정 제17-1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 지침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규정 제17-13조제2항제

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현지법인인 대북투자자가 대북투자와 관련하여 외국환관리규정 제17-1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 지침에 중대한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현지법인의 해외투자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당해 현지법인의 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직접 당해 해외투자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③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대북투자사업의 분석결과 경영이 부실한 대북투자자에 대하여는 신규 대북투자의 승인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재정경제원장관을 경유하여 통일원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절 북한지사

제14조 (북한지사의 구분) 북한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북한의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하는 “북한지점”

2. 북한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북한사무소”

제15조 (북한지사의 설치)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은 북한지사 설치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한다.

②북한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인을 받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북한지점의 영업기금) ①북한지점을 설치한 자가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바에 따라 북한지점에 영업기금(당해 북한지점의 설치비·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하고 현지 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북한지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 대신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북한지점의 영업기금은 당해 지점의 인정된

영업 활동을 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7조 (북한사무소의 설치비) ① 북한사무소의 설치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북한사무소의 설치비는 북한사무소의 설치 또는 확장에 따르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등 북한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구입비 또는 임차료(장기임대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지불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2. 통산집기류(자동차를 포함한다)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3. 영선비(사무소의 수리비 또는 원상복구비를 포함한다)

4. 전화, 텔레스 등 통신관계 설치비

5. 기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본적 지출비용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 지급을 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북한사무소의 설치계획서에 의하여 사전개산 지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비 지급인증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의 정산결과 미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18조의 유지활동비로 전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용금액은 당해 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지급인증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제18조 (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 ① 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북한사무소의 활동 및 유지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말한다)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는 기본경비와 기타 경비로 구분한다.

③ 기본경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전액을 지급하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1. 전기, 가스 및 수도료

2. 전신전화료

3. 동산임차료, 부동산 사용료 및 주택수당을 받지 않는 주재원의 주거용 주택임차료(기간단위로 지급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4. 계세공과금

5. 현지인력의 고용에 따른 보수

6. 기타 북한사무소의 운영에 정기적, 필수적으로 소요된다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비

④ 기타 경비는 제3항의 기본경비 이외의 경비로서 그 지급한도는 사무소당 월 미화 2만불 및 주재원 1인당 월 미화 1만불로 하며 경비용도에 관한 확인 및 사후관리를 요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기타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활동비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인증일부터 180일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기타경비 지급을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9조 (북한지점의 결산 순이익금의 처분등) ① 북한지점을 설치한 자(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북한지점은 제외한다)는 당해 거주자의 매회계 기간별로 북한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와 결산결과 발생할 순이익금의 처분내역을 그 결산일부터 5월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결산순이익금의 처분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전기이월 결손액의 총당

2. 남한에 회수

3. 당해 북한지점의 영업기금으로의 운용

제20조 (북한지사의 경비사용에 관한 유지관리의무) 북한지사는 동 지사의 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 및 기타 자금을 보유·사용함에 있어서 각 지사별로 독립창부를 비치하여 그 보유·사용·차입 및 대부내용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북한지사에 관한 사후관리등) ① 북한지사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지사설치를 완료한 후 20일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설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북한지사가 토지이용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중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일부터 20일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취득 또는 처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북한지사를 설치한 자는 당해 북한지사의 반기별 영업활동상황을 반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북한지사의 토지 이용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취득 및 처분, 결산, 자금의 차입 및 대부, 주재원 수 등에 대하여 각 지사별로 종합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북한지사의 폐지등) ①북한지사를 폐지하거나 그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폐지 또는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북한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북한지사의 폐지를 재정경제원장관을 경유하여 통일원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당해 북한지사 또는 이를 설치한 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

2. 북한지점의 결산결과 3회계연도 계속하여 순손실이 발생하고 향후 이익발생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3. 기타 당해 북한지사의 현지활동상황 및 영업 실적 등에 비추어 이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사의 폐지신고를 하거나 폐지지시를 받은 자는 당해 북한지사의 재자산처분대전을 지사를 폐지한 즉시(폐지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폐지지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남한에 회수하고 당해 북한지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재자산처분명 세서와 그 처분대전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매각 증명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현지금융) ①거주자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북한에 설치한 현지법인(이하 "북한현지법인"이라 한다) 및 북한지점이 승인받은 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가 당해 현지금융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의 인증, 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북한 현지법인 또는 북한지점(이하 "북한현지법인 등"이라 한다)이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 없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주자가 승인받은 대북투자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북한 및 해외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2. 북한현지법인 등이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북한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 다만, 북한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와 결연관계에 있는 기업이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기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함에 있어 지급보증은행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현지금융이 승인받은 협력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시설투자를 위한 것일 때에는 통일원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함에 있어 지급보증은행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현지금융이 북한현지법인 등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전년도 매출실적(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초년도 예상매출액)의 100분의 40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④북한현지법인 등이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현지금융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아 차입한 자금은 그 허가 또는 인증받은 내용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그 사용 및 그 차입원리금의 정당한 상환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외국환은행의 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1.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은행의 장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현지금융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을 한 외국환은행의 장

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요하지 아니하는 현지금융의 경우에는 당해 북한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현지금융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

제13049호

관 보 1995. 6. 28. (수요일)

지급보증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⑥재정경제원장관의 현지금융 허가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의 현지금융 인증을 받은 자 및 북한 현지법인 등이 거주자의 보증없이 현지금융을 받은 경우 당해 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자(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자가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현지법인을 설치한 거주자)는 당해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분기보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금융의 사후관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다음 분기 첫 달 말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⑦현지금융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그 허가 또는 인증받은 바에 따라 원금 및 이자와 부대비용을 국내에서 북한 또는 해외로 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의 인증, 지급보증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⑧지급보증은행의 장이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자체없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보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의 내용을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재정경제원장관 및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의 신고: 즉시
2. 제12조제1항의 보고: 1월이내
3.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실: 즉시
4. 제17조제1항의 인증: 1월이내
5. 제18조제5항의 허가: 1월이내
6. 제19조의 결산보고: 1월이내
7.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 1월이내
8. 제22조제1항의 신고: 즉시
9. 제22조제3항의 보고: 1월이내
10.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인증, 제6항의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분기보, 제7항의 인증: 1월이내

제25조 (권한의 위임) 재정경제원장관은 이 지침 제13조,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